투자위험등급 : 2 등급 [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회사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년 4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 년 5 월 14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회사 주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추가형(개방형) 증권투자 회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http://www.midasasset.com
      각 판매회사, 협회→ http://www.kofia.or.kr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4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4
5. 인수에 관한 사항·····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4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5
4. 집합투자업자·····5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8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8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12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13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15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18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0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21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24
1. 재무정보·····2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2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3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2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32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33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34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34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36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36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38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39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41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42
[붙임] 용어풀이·····43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일반투자자들께서는 투자판단 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이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3735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회사는 10조원(액면금액 기준)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주 단위로 모집합니다.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3735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03-05-15	회사 설립
2003-06-13	운용 개시일
2004-07-0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2008-06-12	운용대상에 주식선물, 투자증권 차입 추가
2008-10-21	장기적립식주식형 세제혜택 적용
2009-04-29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마이다 블루칩배당 주식형 투자회사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8층 (대표전화 : 02-3787-35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0.03.31 현재)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허필석	1967	본부장	23	15,793(억)	- 장기신용은행 - 마이다스에셋 주식운용(1999년 9월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개수 : (1개), 운용 규모(350억원)

주1)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식 운용을 담당하는 주식운용본부가 운용합니다. 상기인은 주식운용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

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상기 운용인력의 운용현황 수치에는 채권운용본부 운용 부분(5개 펀드, 55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허필석	2003.6.13~현재

주1) 2010년 3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증권투자회사로써, 이 집합투자회사의 종류 및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형태별 종류 : 증권투자회사
2)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3)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중도환매 가능)
4)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계속 모집이 가능)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u>자산의 60% 이상을</u>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당해 회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운용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지분증권	60% 이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국내 주식	60% 이상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5% 이하(헤지 또는 헤지 외 목적)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수익증권 등	5% 이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회사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차입	20%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

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2) 수익증권 등,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의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나. 투자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ㅇ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회사재산 평가액을 합한 금액인 총위험평가액이 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대상 자산의 주식의 가격변동, 투자자의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계열회사 발행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제외).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회사는 회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에 자산총액의 60%이상, 채권 등에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하며,**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 투자전략

회사는 주식 투자시 시가총액(각 종목의 상장된 주식 전체를 시가로 평가한 총액) 상위 우량주와 배당수익률이 뛰어난 종목 위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으면서도 주가상승기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 채권 투자전략

회사는 자산을 다음과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1)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2)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 제외)

다) 파생상품 투자전략

1) 회사는 투자한 유가증권의 위험관리수단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헤지 또는 추가수익 획득을 위하여 주식에 투자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파생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합니다

☞ 커버드콜 투자전략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행사가격이 현재주가수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콜옵션프리미엄을 꾸준히 확보하는 전략을 말하며, 동전략 실행시 주가추이에 따른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 급등시: 현물 주식 보유 부분에서 큰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수익률 상승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됨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 주가 하락시: 콜옵션 프리미엄 수입으로 현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2) 이 투자회사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운용전략 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적절한 참고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투자회사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회사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위험관리: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로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익 구조: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회사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회사의 수익률 상승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회사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자회사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회사의 주식운용 전략으로 인한 위험	주식 투자시 시가총액(각 종목의 상장된 주식 전체를 시가로 평가한 총액) 상위 우량주 와 배당수익률(주당 배당 금액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 투자하므로, 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으로 인한 위험	이 투자회사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회사의 수익률 상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자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자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회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회사의 주식은 주주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보유자산의 현저한 거래부진이나 천재지변, 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거래정지, 부도, 대량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을 경우 환매가 연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회사는 회사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여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5등급의 위험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등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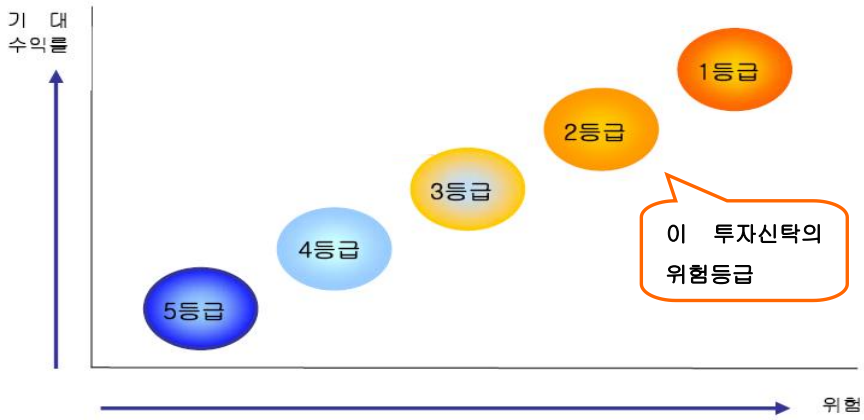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며, 주식시장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원금 보존 추구형 제외)
2 등급	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위험을 축소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중간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원금 보존 추구형)
4 등급	낮은 위험	-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 MMF

주1)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대한 예시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위험등급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등과 같은 일부 장기투자 목적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따라 상기 기준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수청약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청약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로 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이 입고되고, 청약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계좌로 환급됨

☞ 15시[오후3시] 이전에 청약금을 납입한 경우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주식청약일 (청약증거금납입)	주식매입일 (기준가적용일)

나. 15시[오후3시] 경과 후 청약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주당 순자산가치로 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이 입고되고, 청약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계좌로 환급됨

☞ 15시[오후3시] 경과 후 청약금을 납입한 경우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주식청약일 (청약증거금납입)	(매입청구일)	주식매입일 (기준가적용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회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마켓타이밍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주간 이익의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주의 주식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회사의 주식은 언제라도 환매가 가능하며 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

는 사유(이하 “해산 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회사와 자산운용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을** 말한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을 말한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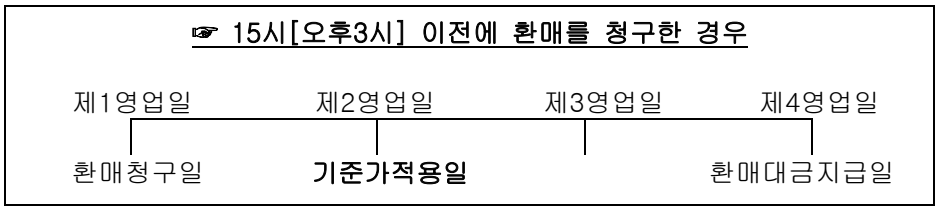

나. 15시[오후3시]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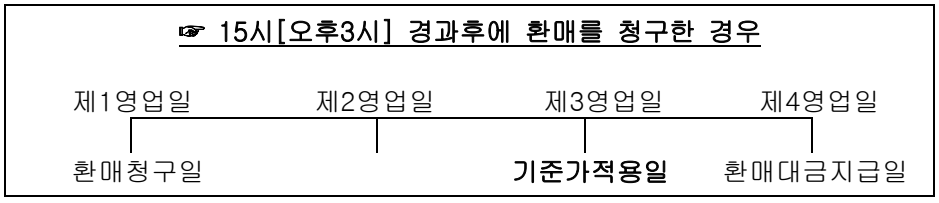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의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 고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해당사항 없음	환매 시

주)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5) 일부환매의 청구

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주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식을 교부합니다. 단, 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주식의 수가 1만주 미만이 되는 경우 주주는 그 1만주 미만의 잔여주식에 대하여도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해산한 경우

③ 회사의 순자산액에 10억에 미달하는 경우

④ 결산일 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⑤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환매연기

① 주식의 환매를 요구 받은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주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회사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신탁업자, 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 재개 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다)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가격,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라)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①, ⑤ 및 ⑥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주식의 일부환매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종류 주식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9) 빈번한 환매와 관련한 유의사항

이 투자회사는 가입시에 정액의 선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투자자가 이 투자회사 주권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환매할 경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공고일의 기준가격(당해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당해 종류 주식의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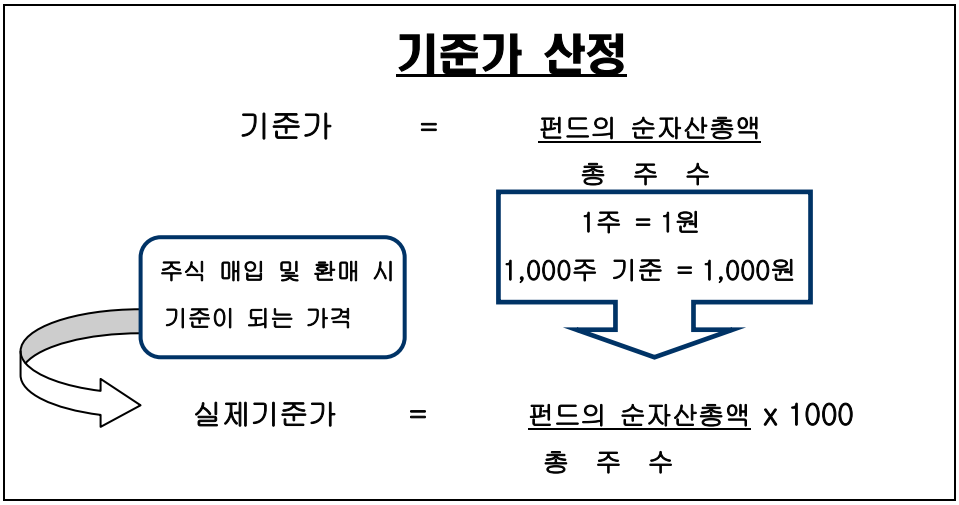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 급 비 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매입 시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 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 급 비 율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5%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연 0.50%	
신탁업자보수	연 0.02%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4%	
기타 비용	연 0.03%	수시발생
총보수 및 비용	연 1.24%	
증권 거래 비용	연 0.37%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9.5.14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9.5.1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콜수수료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투자회사보수의 투자기간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예시 (누적)

(단위 : 만원)

투자기간	1년 경과	3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03	41.06	71.97	163.84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제외)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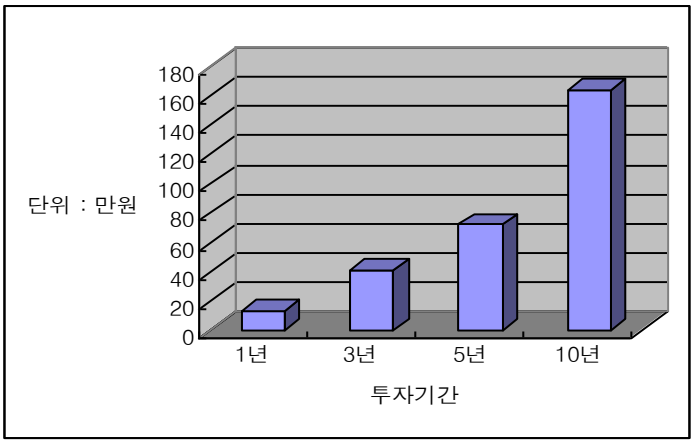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주식의 이익금을 투자회사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1) 이익분배

가) 회사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다) 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라)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가치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2) 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가) 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 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회사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각 결산기 사업소득 중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경우 환매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또한 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하여 투자했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입니다.

주)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 최소투자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단, 소수투자자가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95% 이상 소유시 면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의 기금만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

(2) 주주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주주는 투자회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존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회사의 주식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투자회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투자회사의 주주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증권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 공시됩니다.

(3) 주주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회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이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회사의 주주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주주가 이 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주주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 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주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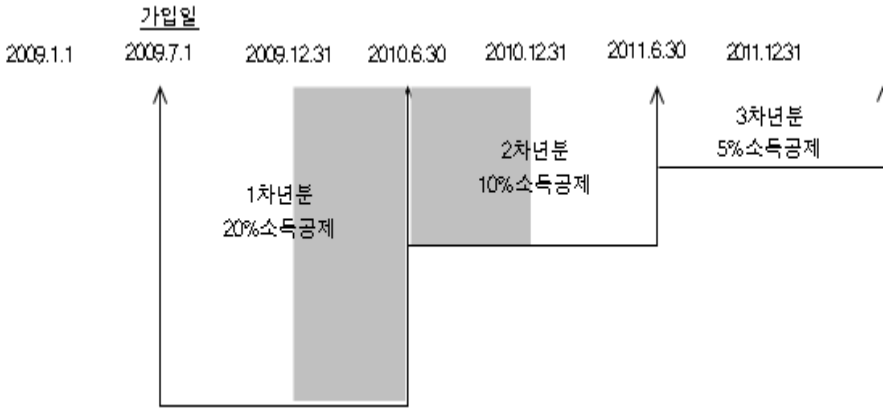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발기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결격요건 해당여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116-81-71681	186,822,162주	해당사항 없음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감독이사	생년월일	주요경력	결격요건 해당여부
김형진	1962년 7월 15일	Park & Kim 변호사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현) 법무법인 정세 미국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홍성태	1962년 9월 5일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영학박사)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現)상명대학교 경상행정학부 전임강사	해당사항 없음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감독이사에게 보수지급에 관한 승인을 받음

- 보수 : 매월 20만원
- 퇴직금 : 없음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6기(2008.05.15-2009.05.14), 제5기(2007.05.15-2008.05.14) 각각 적정의견이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 7 기 반기	제 6 기	제 5 기
	2009-11-14	2009-05-14	2008-05-14
운용자산	72,947,627,977	71,371,339,165	115,559,110,679
증권	63,023,254,000	62,480,992,100	94,272,937,850
파생상품	61,440,000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62,926,137	93,547,065	128,572,829
기타 운용자산	9,800,007,840	8,796,800,000	21,157,600,000
기타자산	862,180,346	2,260,303,308	421,848,431
자산총계	73,809,808,323	73,631,642,473	115,980,959,110
운용부채	175,680,000		183,645,000
기타부채	966,420,859	1,964,763,720	18,804,471,397
부채총계	1,142,100,859	1,964,763,720	18,988,116,397
원본	76,915,521,152	90,463,291,714	96,935,242,713
수익조정금	-17,713,303,233		
이익잉여금	13,465,489,545	-18,796,412,961	57,600,000
자본총계	72,667,707,464	71,666,878,753	96,992,842,713
손익계산서			
항목	제 7 기 반기	제 6 기	제 5 기
	2009-05-15 ~2009-11-14	2007-05-15 ~2008-05-14	2006-05-15 ~2007-05-14
운용수익	13,939,917,547	-23,959,711,407	17,371,080,377
이자수익	78,617,443	565,604,441	958,979,936
배당수익	38,887,900	1,235,377,090	1,875,254,360
매매/평가차익(손)	13,821,584,560	-25,762,703,515	14,536,027,505
기타 수익	827,644	2,010,577	818,576
운용비용	474,428,002	993,039,283	1,370,185,557
관련회사 보수	455,051,900	951,204,529	1,319,358,462

매매수수료	10,249,815	24,774,070	35,445,840
기타 비용	9,126,287	17,060,684	15,381,255
당기순이익	13,465,489,545	-24,952,750,690	16,000,894,820
매매회전율(%)	122	137	78

나. 대차대조표

제7기 반기 2009년 11월 14일 현재
제6기 2008년 05월 14일 현재
제5기 2007년 05월 14일 현재

(단위 : 원)

항목	제 7 기 반기	제 6 기	제 5 기
	2009-11-14	2009-05-14	2008-05-14
자 산			
I. 운 용 자 산	72,947,627,977	71,371,339,165	115,559,110,679
1. 현금 및 예치금	62,926,137	93,547,065	128,572,829
예 치 금	62,926,137	93,547,065	128,462,649
증 거 금			110,180
2. 대 출 채 권	9,800,007,840	8,700,000,000	21,100,000,000
콜 론	9,800,007,840	8,700,000,000	21,100,000,000
3. 유 가 증 권	63,023,254,000	62,480,992,100	94,272,937,850
지 분 증 권	63,023,254,000	62,480,992,100	94,272,937,850
4. 파 생 상 품	61,440,000		
파 생 상 품	61,440,000		
5. 부동산 및 실물자산			
부 동 산			
실 물 자 산			
6. 기타 운용자산		96,800,000	57,600,000
기타 운용자산		96,800,000	57,600,000
II.기 타 자 산	862,180,346	2,260,303,308	421,848,431
1. 매도가능증권미수금	685,403,420	2,074,895,160	64,181,260
2. 정 산 미 수 금	175,680,000		36,729,000
3. 미 수 이 자	1,096,926	508,426	2,899,768
4. 미 수 배 당 금		184,821,000	317,897,950
5. 기 타 미 수 금		78,722	140,453
자 산 총 계	73,809,808,323	73,631,642,473	115,980,959,110
부 채			
I. 운 용 부 채	175,680,000		183,645,000
1. 파 생 상 품	175,680,000		183,645,000
II.기 타 부 채	966,420,859	1,964,763,720	18,804,471,397

1. 매도가능증권미지급금	719,633,230	1,733,378,150	
2. 정 산 미 지 급 금			
3. 해 지 미 지 급 금	14,330,290	31,134,594	117,273,363
4. 수 수 료 미 지 급 금	232,457,339	200,250,976	337,445,899
5. 미지급 이익분배금			18,349,752,135
부 채 총 계	1,142,100,859	1,964,763,720	18,988,116,397
자 본			
I. 원 본	76,915,521,152	90,463,291,714	96,935,242,713
II. 이 익 잉 여 금	-4,247,813,688	-18,796,412,961	57,600,000
자 본 총 계	72,667,707,464	71,666,878,753	96,992,842,71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3,809,808,323	73,631,642,473	115,980,959,110

다. 손익계산서

제7기 반기 2009년 05월 15일부터 2009년 11월 14일까지

제6기 2007년 05월 15일부터 2008년 05월 14일까지

제5기 2006년 05월 15일부터 2007년 05월 14일까지

(단위 : 원)

항목	제 7 기 반기 2009-05-15~ 2009-11-14	제 6 기 2008-05-15~ 2009-05-14	제 5 기 2007-05-15~ 2008-05-14
I. 운 용 수 익	13,939,917,547	-23,959,711,407	17,371,080,377
1. 투 자 수 익	118,332,987	1,802,992,108	2,835,052,872
이 자 수 익	78,617,443	565,604,441	958,979,936
배 당 금 수 익	38,887,900	1,235,377,090	1,875,254,360
수 수 료 수 익	734,389	1,667,515	530,671
기타 투자수익	93,255	343,062	287,905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8,027,400,787	5,610,388,810	20,744,124,280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16,933,017,787	2,713,057,810	18,381,962,280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094,383,000	2,897,331,000	2,362,162,00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205,816,227	31,373,092,325	6,208,096,775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3,444,426,227	29,924,171,325	2,699,970,77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761,390,000	1,448,921,000	3,508,126,000
II.운 용 비 용	474,428,002	993,039,283	1,370,185,557
1. 운 용 수 수 료	244,675,041	511,362,905	709,236,382
2. 판 매 수 수 료	187,791,655	392,639,255	544,654,455
3. 수 탁 수 수 료	22,585,204	47,202,369	65,467,625
4. 지 급 수 수 료	10,249,815	24,774,070	35,445,840
5. 기 타 비 용	9,126,287	17,060,684	15,381,255
III. 당기순(손실)이익	13,465,489,545	-24,952,750,690	16,000,894,820
1,000 좌당 순(손실)이익	160	-246	17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기간중 설정		기간중 환매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07-05-15 ~2008-05-14	824	824	613	708	467	539	969	993
2008-05-14 ~2009-05-14	969	969	263	248	327	252	905	965
2009-05-15 ~2009-11-14	905	716	32	30	168	153	769	593

*** 상기 설정 및 환매 내역 중 기간별 재투자로 인한 좌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재투자 좌수	재투자 금액
2007-05-15~2008-05-14	94	94
2008-05-15~2009-05-14	182	182
2009-05-15~2009-11-14	-	-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2010년 03월 31일)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주식의 총수
10조	66,518,966,595주	9조 933,481,033,405주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2010년 03월 31일)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고
투자회사 주식	무액면, 기명식	66,518,966,595주	66,518,966,595원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이 회사의 전체적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기 간	최근 1년 (09.04.01 ~10.03.31)	최근 2년 (08.04.01 ~10.03.31)	최근 3년 (07.04.01 ~10.03.31)	최근 5년 (05.04.01 ~10.03.31)	설정일 이후 (03.06.13 ~10.03.31)
투자회사	42.74%	3.77%	9.74%	12.83%	15.69%
참고지수	30.27%	1.64%	5.89%	10.62%	12.63%

주1) 참고지수: KOSPI*75%+CD금리*25%
2)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기 간	최근 1년차 (09.04.01 ~10.03.31)	최근 2년차 (08.04.01 ~09.03.31)	최근 3년차 (07.04.01 ~08.03.31)	최근 4년차 (06.04.01 ~07.03.31)	최근 5년차 (05.04.01 ~06.03.31)
투자회사	42.74%	-24.56%	22.72%	7.33%	28.9%

참고지수	30.27%	-20.69%	14.92%	6.59%	30.88%

주1) 참고지수: KOSPI*75%+CD금리*25%

2)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단기대출 및예금	기타	
원화	67,205				174					6,616	975	74,969
비율	89.64				0.23					8.83	1.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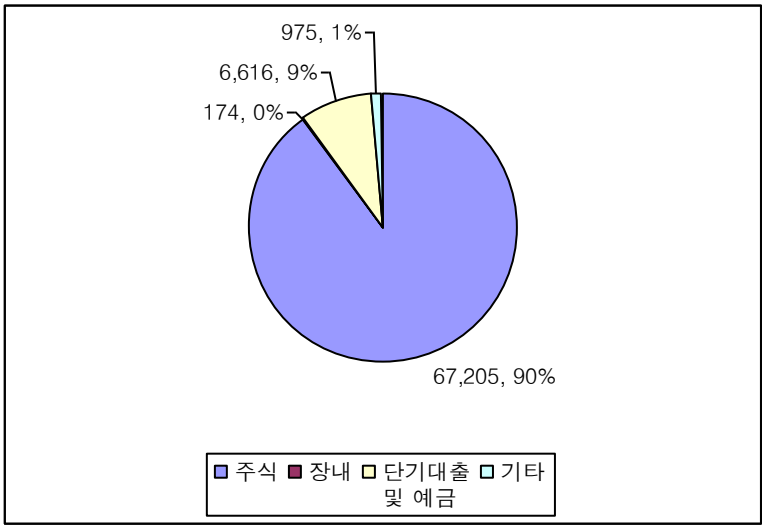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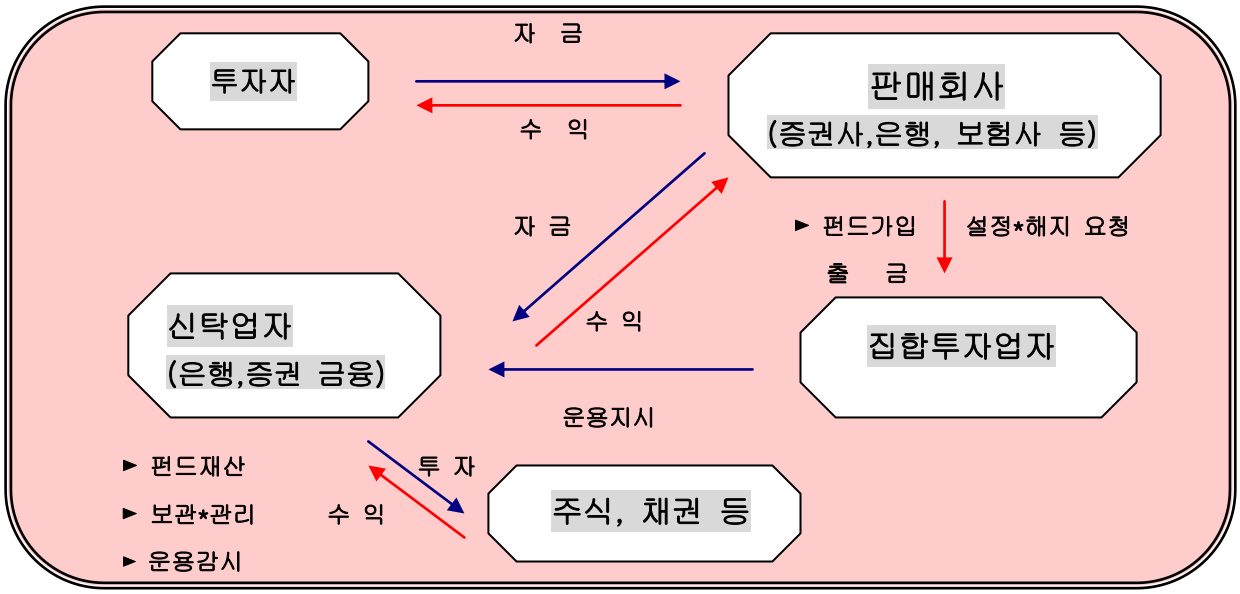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집합투자업자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www.midasasset.com)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3787-3500)
회 사 연 혁	1999. 2. 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억원 1999. 3. 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 7. 7 상호변경 : 마이다스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004. 2. 1 100억원으로 자본금 증자
자본금	100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헌 (10%), 이재관(10%) 등

나. 주요 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1. 투자회사의 설정.해지
2.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회사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11기 09.3.31 현재	10기 08.3.31	항목	11기 08.4.1~09.3.31	10기 07.4.1~08.3.31
현금및예치금	180	144	영업수익	256	282
기타자산	308	304	영업비용	141	110
자산총계	**488**	**448**	영업이익	116	173
예수부채	5	9	영업외수익	-	-
기타부채	30	37	영업외비용	2	2
부채총계	**34**	**45**	법인세차감 전순이익	113	171
자본금	100	100	법인세비용	33	48
이익잉여금	347	301	**당기순이익**	**81**	**123**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7	2			
자본총계	**454**	**403**			

라. 운용자산 규모

(2010.03.31 현재 / 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	채권	ELS					
수탁고	17,624	1,203	7,666	3,829	128	-	-	30,45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회 사 연 혁	1959.12.1 회사설립 (합병일 기준)

나. 주요 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신탁업자의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회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신탁업자의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2014-2000)
회 사 연 혁	1999. 2. 9 설립 2004. 9. 30 팀스코리아 합병 2008. 3. 24 상호변경 : 에이브레인→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펀드서비스 2009. 11 상호변경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펀드서비스→한국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

나. 주요 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3. 보수인출 등의 업무

(2) 일반사무회사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연락처	02-3770-0400	739-359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06.16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0.06	2000. 7. 1.
자본금	30억원	30억원	50억원

나. 주요 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회사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회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부. 기타 주주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구성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주식 주주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 하여 법인이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결의 가 있는 경우 기타 지역에서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 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은 주식 1개마다 1개로 합니다.
-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④ 투자회사의 합병

⑤ 투자회사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⑥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⑧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⑩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주식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으며,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나.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회사의 주주는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분배금과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는 결산에 따른 결산분배금 또는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신탁업자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일 현재 회사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주주는 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투자회사투자자에 관련된 회사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투자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회사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② 주주총회의 결의
③ 피흡수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⑥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2) 상기와 같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②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 상호·사업자등록번호)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현황과 투자회사 주식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회사 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한 주주에의 통지
-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그 외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 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투자증권거래

구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주식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애널리스트 3. 평가항목 애널리스트의 정보제공, 탐장주선, 세미나 주최 등 당사 운용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
채권등	1. 평가방법 매 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나. 장내파생상품거래

구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주식관련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3. 평가항목 시황관련 정보제공 등 운용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과 매매체결의 신속/정확성
채권관련등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http://www.midasasset.co.kr/company/com03_07.aspx)

6. 간이투자설명서
7.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주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